제정 2022년 12월 22일 조례 제2020호 일부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8호 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오산시 답례품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 - 1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(이하 "답례품"이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- 2.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- 1.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
  - 2. 오산시 관내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3.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  - 4.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대표 등 오산시 관내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
  - 5.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
  - 6.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③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, 심의 · 의결 후 해산한다.

-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.
- 제3조(답례품의 종류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·채취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·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, 숙박, 관광,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24. 5. 17〉
  - 1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
  - 2. 「축산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
  - 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
  - 4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통주
  - 5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
  - 6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
  - 7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
  - 8. 오산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
  - 9.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
  - 10. 오산시의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 가 생산한 물품
  - 11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
  - 12.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승공예품
  - 13. 오산시 지역사랑 상품권, 관광 입장권 등 오산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

가증권

- 1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·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**제4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)**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 - 1.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
  - 2. 답례품의 보관·상품화·품질관리·배송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
  - 3. 오산시 관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
  - 4. 최근 3년간 생산・공급 실적 및 매출액
  - 5.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
  - 6.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, 오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 • 판매 여부
  - 7.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)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 하여 선정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.
  - 1.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
  - 2.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
  - 3.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.
- 제6조(답례품비의 지급)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.

- 1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
- 2.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
- 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
- 4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
- 5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
- 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 ·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 -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 -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- 제9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 - ② 기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・관리한다.
  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제10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· 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 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제11조(기금운용관)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  - 1. 기금운용관: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과장
  - 2. 기금출납원: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팀장
  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, 기금에 과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

- 제12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 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 고향사랑기 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- 3.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4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당연직 위원 :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
  - 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회계사,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
  - 나.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  - 다.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
  - 라.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
- 제1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2.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8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  -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-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존해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 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.
  -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- 1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  - 2.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  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

충족이 어려운 경우
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
  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 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  -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.
- 제20조(심의위원회의 간사)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 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- 1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에 관한 사무
  - 3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- 제21조(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22조(위원의 수당 등)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3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- 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 - 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24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해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  - 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
  - 2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  -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· 지출에 관한 서류
 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  - 1.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
  - 2.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
  - 3.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
  - 4.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
- 제3조(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)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

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,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부칙〈2024. 5. 17 조례 제2168호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